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675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8.

발 의 자 : 이종배・이인선・김승수 정동만・박충권・서지영 이헌승・최보윤・이만희 엄태영・김성원 의원 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・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・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,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,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.

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국・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.

이에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・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, 공공부지의 수

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,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항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8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18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 등) ① ~ ④ (생략)	제18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100분의 80-----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